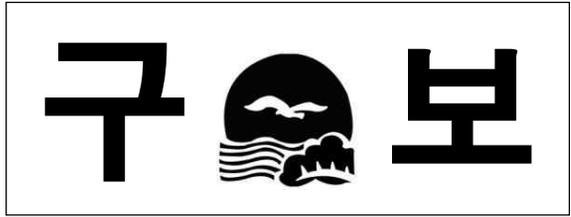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 중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선 결 | 기 관 의 장 |
| | |



제 1422 호

2024년 4월 22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-81호 (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) 3
-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-82호 (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)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-700호 (사망자 및 완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) 5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-701호 (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) 7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-709호 (「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) 10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-714호 (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) 15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-716호 (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(의제)를 위한 공람·공고) 17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인천광역시 중구

편집 : 홍보체육실

고 시
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-8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하고,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내역

| 허가번호 | 허가일 | 위치 | 면적(㎡) | 목적 | 피허가자 (성명 및 주소) | 기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024-05호 | 2024. 4.19.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08-30번지 인근 공유수면 | 72㎡ | 해양구조대 사무실 운영 및 (해양구조대 대기 구조장비 보관 |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195 (해양구조협회 대표 이은근) | 2024.5.8. ~ 2027.5.7. |

2024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-8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고,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
| 허가번호 | 허가일 | 위치 | 면적(㎡) | 목적 | 피허가자 (성명 및 주소) | 기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024-06호 | 2024. 4.19. |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50-8 | 287㎡ (시설물 : 78㎡) | 광명 체험어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(안전교육장 설치) |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(해양수산과)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| 2024.4.19. ~ 2029.4.18. |

2024년 4월 22일

인천광역시중구청장

공 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-700호

사망자 및 안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

사망자 및 안전출국자 명의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같은 법 제 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. 4. 22.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- 1. 공 고 명 : 사망자·안전출국자 명의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4. 04. 22. ~ 2024. 05. 07.
- 3. 공고대상 : 7대(붙임 참조)

4. 공고내용

- 가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 제81조(벌칙) 및 제82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나.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(말소등록)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(벌칙) 제1호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 032-760-7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운행정지 차량 내역

| 연번 | 자동차등록번호 | 소유자명 | 운행정지명령 사유 | 운행정지명령 등록일자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 | 68오0582 | PI** ****GYU | 사망 | 2024. 4. 16. |
| 2 | 12무1944 | Y** ****HAO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| 3 | 21도3151 | AB**AL**** GA****HAN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| 4 | 108로3485 | Y** ***CHUN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| 5 | 10두3102 | MU**** SOM***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| 6 | 29다7635 | AC**** KW*** NY***KYE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| 7 | 14소6308 | AB****HMAN** R***ZAN | 완전출국 | 2024. 4. 16. |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-701호

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, 주소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 공 고 명 :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4. 4. 22. ~ 2024. 5. 07. (15일간)
- 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구보
- 4. 법적근거 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
- 5. 공고송달 대상자 : 20대 **【붙임】**
- 6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예고 하오니, 상속자 또는 차량 점유자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, 이전(말소)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2조(벌칙) 제2의2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(말소등록)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0조(벌칙)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(032-760-76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【붙임】

공시송달 대상자

| 차량번호 | 소유자 (상속자) | 주 소(본거지) | 반송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52다4821 | 최*근 |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**번길 *, ***호 (율목동, 동남아트빌라*차) | 폐문부재 |
| 52나8501 | 윤*대 (김*영) |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**번길 **, ***동***호 (김포양촌**마을자연앤데시향아파트) | 폐문부재 |
| 07부2930 | 김*권 |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로**번길 **-**, *층(중산동) | 폐문부재 |
| 인천34너8231 | 이*기 (이*중)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*로***,***호(가산동) | 기타 |
| 전북5라3044 | 정*용 (정*성) |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**, ***동***호 (금곡동, 수원당수*단지) | 기타 |
| | (정*연) |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1로**, ***동***호 (금곡동, 수원***단지) | 폐문부재 |
| 인천2마9019 | 장*안 (채*홍) |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***,***동***호 (운남동 영종국제도시 *****)아파트) | 폐문부재 |
| 서울4도2701 | 심*국 (심*별) |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***-**, ***호(라*캐슬) | 기타 |
| 인천5러8919 | 김*선 (김*순) |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**번길**, ***동***호 (운서동, *****)아파트) | 폐문부재 |
| 인천3마9797 | 김*천 (김*수)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**,**동***호 (용현동, **아파트) | 기타 |
| | (김*현) |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**번길** *동***호(풍무동) | 폐문부재 |
| 08오4845 | 최*용 (최*은, 최*수) |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**번길**(복정동) | 주소불명 |
| 대전1가7070 | 유*근 (유*혜) |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**번길**(가좌동) | 기타 |
| 서울1서7559 | 전*분 (권*태) |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***-** ***호 (녹번동, **아파트) | 기타 |
| 34도7560, 86서7567 | 정*식 (정*) |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**번길**, ***동***호 (청라동, ****스트) | 수취인불명 |
| | (정*훈)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**,***동***호 (청라동, ****) | 기타 |
| 인천7너5731 | 윤*남 (윤*현) |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*** **동***호 (중산동, 하늘도시****1단지) | 폐문부재 |

| 차량번호 | 소유자 (상속자) | 주 소(본거지) | 반송사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서울7무8433 | 정*자 (최*미) |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*번길**, ***호(광명동, **빌라) | 주소불명 |
| | (최*숙) |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*로**길**, *층 (삼호읍) | 폐문부재 |
| | (최*석) |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***,***동****호 (중산동*편한세상 영중*****) | 폐문부재 |
| | (최*주) |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**, ***동***호 (작전동, ***** **아파트) | 기타 |
| 경기7모5670 | 김*환 (김*석)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***번길** ***호 | 폐문부재 |
| 98누5868 | 안*희 |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***, ***동****호 (중산동, 영종하늘도시 *****) | 수취인불명 |
| 충북34가4653 | 김*희 (김*실) |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**길**(사당동) | 폐문부재 |
| 인천7가9411 | 김*권 (김*태)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**-**,***호 (용현동, ***) | 폐문부재 |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-709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 정 이 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문화지구진흥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를 관리하고 육성하고자 함.

□ 주 요 내 용

- 가.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를 신설함 (안 제17조제4호 및 제5호)
- 나.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7조제6호)

□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24년 5월 13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(문화유산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 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- ▷ 주 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(관동1가)
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(문화유산팀)
- ▷ 전 화 : 032)760-6448 [FAX 032)760-6983]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공동시설,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
- 5.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17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개항장 문화 지구 관리·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4. (생 략) | 제17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공동시설,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 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5.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 |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| 검 토 구 분 | | 유 | 무 |
|---------|---|---|---|
| 검토사항 | 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 | | |

부서별(실·과) 의견

| 협의개요 | 실·과별 | 제출의견 | 검토내용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

[주민용]

주민 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

| | | | |
|----|--|------|--|
| 성명 | | 생년월일 | |
| 주소 | | 연락처 | |

의견제출 내용

제출일자 : 년 월 일
 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-714호
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위반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- 1. 처분제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
- 2. 법적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, 제6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
- 3. 공고대상자

| 순번 | 성명 | 주소 | 행정처분내용 | 공시송달 사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박*웅 |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38번길 19-10 |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| 폐문부재 |
| 2 | 최*수 |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7, 422호 | | 폐문부재 |

4. 공고기간 : 2024. 4. 22. ~ 2024. 5. 7. (15일간)

5. 공고사항

가.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,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(☎032-760-7698, FAX.032-760-6997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아울러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다.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.
- 라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% 감경 조치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 이상),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(단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)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☎032-760-769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-716호

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(의제)를 위한 공람·공고

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0-1번지 일원 “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·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4. 22.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주요내용

- 가.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: 2024. 3. 29.
- 나. 사업의 명칭: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다. 위 치: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0-1번지 일대
- 라. 시 행 면 적: 33,675.2㎡
- 마. 시 행 자 :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바. 시 행 기 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
- 사. 건 축 계 획: 지하 2층 / 지상 39층 분양 아파트 4개동(627세대) /
 임대아파트 1개동(65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- 아. 공 공 시 설: 도로 4,127.2㎡, 어린이공원 1,830.4㎡, 완충녹지① 477.4㎡
 완충녹지② 1,910.7㎡, 경관녹지 690.1㎡

2. 공람에 관한 사항

- 가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- 나. 공람장소: 중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760-7589)
 개항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760-6225)
 송월아파트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(☎032-762-4635)
- 다. 공람내용: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

